

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4년 안전관리 전문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2023. 1. 1.부터 2023.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지표: 운영체계(A), 업무 충실성(B), 업무성과(C), 가·감점(D)으로 구성

- **[붙임1]** 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참고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 급	기 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평가거부」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2024. 3. 4.(월) ~ 5. 10.(금)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센터 담당자 통한 별도 연락 예정

- 잠정결과(절대점수) 통보: 5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 6월 중(예정)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2]** 참고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

- 최종 평가등급 공표: 2024년 7월(예정)

7. 사전제출자료(우수사례) 업로드

- **[붙임3]** 우수사례(D.1.①, 가점 25점)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자료(지역특성화 사업 또는 특성있는 기술지도 방법)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제출 방법은 **[붙임4]** 참고)
- 제출된 우수사례 중 고득점 사례는 향후 우수사례 발표대회 출품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예정이니 이점 유념하여 사례 선정 필요
- 지역사무소(지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사례만 인정되며, 본사 등 지원 조직에서 추진한 사례 제출 시 "**허위자료**"로 간주
- 제출일자: 2월 19일(월) ~ 2월 29일(목)까지 제출(세부내용은 향후 공지사항 확인 필요)
※ 미제출 시 가점평가는 미 실시하고, 거짓 또는 허위사례는 가점평가 취소 및 최하위 등급 부여 가능

※ 기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업무관리자"만 사전제출자료 업로드 가능하며, 업무관리자가 없거나(신규기관에 해당) 변경된 경우 아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규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K2B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② 변경기관) 평가 업무관리자 변경 시에는 ①K2B 가입신청서*, ②재직증명서, ③기관 자체 양식의 공문에 변경 전, 후의 업무관리자를 작성하여 제출

* K2B 가입신청서 양식 및 제출방법은 실시 공고문의 **[붙임4]** 참조

8.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① 평가지표 및 평가 운영 전반: 본부 민간기관평가부(052-7030-105, 107)
- ② 평가 일정 관련: 중부권평가센터(02-6924-8860)
남부권평가센터(052-703-3313)

[붙임] 관련자료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고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안전관리전문기관 → 자료실 → 평가 실시 알림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고

2024년 2월 16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